

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

의안 번호	154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1. 1. .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보고이유

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를 사전에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안정된 보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합니다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1) 대상시설

구분	시설명	소재지	규모(명, m ²)		현 위탁체	계약 만료일
			정원	연면적		
재계약	꽃초롱	마장로 164	64	324	기독교대한 감리회 꽃재교회	2021.2.28.
	송정 햇살	송정12길 1	95	495	손자옥	2021.2.28.
	신금호 자이	금호로 173	56	242	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	2021.6.30.
	홍익	마장로 141	124	804	박혜정	2021.6.30.

2) 위탁기간: 계약만료 익일부터 5년

3) 위탁운영체 선정: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·선정

- 재계약: 현 위탁운영체의 적격 여부 심의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1)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관리(기자재, 교재교구, 기타 물품 등)
- 2)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(아동 입소·상담, 보육운영계획수립, 조직·인사·회계)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2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4조(위탁운영)
- 3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1) 민간위탁 시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경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민간영역의 보육시스템 및 체계를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재원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
- 2)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어린이집 전체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, 「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4조 및 「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

나. 예산 조치(2019년 지원예산)

- 꽃초롱(238백만 원), 송정햇살(329백만 원),
신금호자이(268백만 원), 흥익(544백만 원)

[참고법령]

□ 영유아보육법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보육 조례

제14조(위탁운영) ① 구립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,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,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.<개정 2013.7.18>

②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결정한다.

□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·시설관리 사무 등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자치사무는 성동구의회 동의가 필요하다. 다만,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성동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.